

자동차 상속권 동의 및 협의서

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(이전등록), 자동차등록령 제26조(이전등록신청),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(이전등록신청) 및 민법 제997조(상속개시), 민법 제1000조(상속순위), 제1006조(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)의 규정에 의거 이 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상속 자동차의 표시

자동차등록번호	차대번호	사망자 성명	비고

상속자

※ 직접 방문시 서명가능

피상속인과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인감도장

상속 협의자

위 자동차를 상속이전 등록함에 위 상속자에게 상속되는 것에 동의하고 동순위의 상속자인 다음의 우리는 상속권을 포기하며, 추후 문제발생시 상속 포기 및 동의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
피상속인과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인감도장

위 상속인 중 ()는 미성년자이므로 민법 제920조의 규정에 의거 친권자인 ()(관계:)가 대리함.

※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이전등록 해야 합니다. (과태료 최고 금액 50만원)

- ※ 첨부서류 : 1. 기본증명서(사망자),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자) 각 1부
 2. 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1부
 3. 자동차등록증 원본 1부
 4.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(상속받는 자) 1부

- * 추가서류 [1.미성년자가 상속자일 경우 : 기본증명서(미성년자), 가족관계증명서(미성년자) 각 1부
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과 미성년자 자동차취득동의서 또는 미성년자 양도동의서 각 1부
 [2.미성년자가 상속협의자일 경우(상속포기 시 : 법원판결문, 기본증명서(미성년자), 가족관계증명서(미성년자) 각 1부
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과 미성년자 자동차취득동의서 또는 미성년자 양도동의서 각 1부

군 산 시장 귀하